

개발사업규정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(안)

1. 제안이유

이원화된 단지/주택분야 기술심의위원회 및 용역평가 관련 업무를 업무 통합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통합하기 위하여 개발사업규정 및 시행세칙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기술심의위원회 명칭 통일 및 통합 운영

-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운영중인 단지개발분야의 “기술심의위원회”와 주택건설분야의 “주택설계위원회”를 통합하여 “기술심의위원회”로 운영
 - 개발사업규정 : 위원회를 총칙으로 이동하여 “기술심의위원회”로 통합
 -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: 주택분야의 “주택설계위원회” 명칭을 “기술심의위원회”로 일괄 수정

나. 설계용역 평가관련 통합 운영

-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설계용역 평가업무가 개발사업규정 단지개발 분야에만 반영되어 있어, 통합 운영을 위하여 총칙으로 이동.
 - 개발사업규정 : 단지개발분야 용역평가 업무관련 조항을 총칙으로 이동
 -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: 개발사업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세칙 수정